



‘속앓이’

함 철 훈

전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송실대 대학원 석사
충남대 대학원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KAIST 대우교수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 역임

사람이나 조직이나 세상과 부닥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으로만 끄끙덜 뿐 시원스레 들어 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 겪는 심리적 현상이 바로 ‘속앓이’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속앓이에 대한 해결책은 누군가 그 숨겨진 마음을 읽고 이를 세상에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감옥 운영상의 문제점을 외부에 노출할 수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감옥 운영상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라도 이를 죄수가 외부에 밝힐 경우 그 자신이 당할 후유증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소신 있는 어느 인권 변호사가 죄수들의 속앓이를 대변하여 행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이다. 원자력 분야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속앓이가 있는 것 같기에 개인적 소감을 적어본다.

원자력 종사자의 감정 노동

얼마 전, 국내 굴지 기업의 임원이 기내에서 라면 때문에 항공사 여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한 일이 문제가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감정노동’이 클로즈업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은 왕’이라는 근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특히 호텔, 식당, 항공 및 유통 등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이른바 ‘진상’을 부려도 울적



올라오는 울화를 목구멍까지 눌러두고 미소를 지어야 한다.

TV 텔런트가 자기의 아들이 교통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대본에 따라 깔깔대고 웃는 연기를 해야 하듯, 다수의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고상한 매너로 고객에게 미소를 지어야 한다.

이처럼 ‘배우가 연기하듯 고객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감정 노동’이라 한다. 감정 노동의 극단적 표출이 이른바 ‘사물 존칭’이다. 햄버거 영업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5000원이십니다.”라든가, “채고품은 창고에 계십니다.”등등 앞으로 이 나라 국문학자들의 고뇌가 엿보이는 현상이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에 대한 사회의 비우호적 분위기 속에서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원전의 무리한 가동을 불러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한수원은 그동안 조그만 실수에도 동네북이 되어왔고, 감정 노동자로서 그 임·직원들의 마음은 울어도 얼굴은 웃어야 했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외부의 빈번한 공격에 대면하여 일하는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직장 내 업무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원자력 안전문화에 대한 점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감정 노동은 외부 고객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나 개별 기업이 농통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감정 노동에 따른 육체적·심리적 탈진을 줄이기 위한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해결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와 규제 기관의 태도가 중요하다. 오늘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규제 기관은 서비스 노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감정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이 요

구된다.

원자력 임·직원의 유관 기업 취업 제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직자윤리법」이다.

동법 제17조에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간과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100세 수명 시대로 인간의 사회적 활동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요청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보다 일을 통해서이다. 사람의 행복도 일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라면 공직자윤리법이 인간의 행복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공직자윤리법이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부 사태를 빌미로 광범위한 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특히 민영 공기업의 임·직원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사익적 요청을 반영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법률의 “일반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방식”을 “일반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배우가 연기하듯 고객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감정 노동’이라 한다.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에 대한 사회의 비우호적 분위기 속에서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원전의 무리한 가동을 불러왔다. 이러한 외중에서 한수원은 그동안 조그만 실수에도 동네 북이 되어왔고, 감정 노동자로서 그 임·직원들의 마음은 울어도 얼굴은 웃어야 했을 것이다. 현재 원자력 안전문화에 대한 점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상생적 갑·을 관계

요즘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가 매우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직접적 ‘갑·을 관계’뿐만 아니라, ‘라면 상무’부터 ‘조폭 우유’까지 항상 ‘갑’의 위치에서만 살아온 일부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갑·을 관계’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설움이 복받쳐 있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을’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 연일 뜨겁다. ‘갑·을 관계’, 을사조약(乙死條約)으로 표현되는 ‘갑의 횡포’라는 단어가 그동안 수없이 거론됐지만, 실제 사례들이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을’들이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갑·을 관계’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하여 형성된다. ‘계약’이라 함은 “복수 당사자가 의사 표시의 합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의사 표시의 합치”라는 표현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응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관계가 ‘갑’과 ‘을’이란 두 단어가 등장하면서 편이하게 달라진다.

원래 ‘갑’과 ‘을’은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였다. 그러나 전혀 대응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오늘날의 부정적

인 ‘갑·을 관계’가 만들어졌다.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갑·을 관계’가 원자력 기관 사이에도 존재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결과적 책임’에 관한 계약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원자로 설계자는 원자로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원자로의 ‘의도된 사용’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용(forseeable use)’에 대해서도 안전하도록 설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설계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하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위험과 인식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원자력 사고를 미리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설계자에게 결과적 책임을 강요한다면 이것 역시 일종의 ‘갑’의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발가락이 다쳐 아프면 발가락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아픈 것이듯, ‘을’에 해당하는 원자력 기관에 책임 문제가 발생된다면 한국의 원자력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갑’에 해당하는 기관에 책임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결사항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요청된다.

이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위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원자력의 발전을 위한 필자의 개인적 소견임을 밝혀둔다. 🍷